



한국산림기술인회 정 관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

제 정 2018. 12. 20.

개 정 2020. 4.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은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약칭 “TKFEA”으로 표기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2조(목적) 기술인회는 「산림기술법」에 의한 산림기술자로 조직하고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가 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기술인회의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둔다.

[전문개정 2020. 4. 8.]

제 2 장 사 업

제4조(일반사업) ① 기술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0. 4. 8.>

1.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3. 기술인회의 홍보와 간행물 등 발행
4. 산림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5. 기술인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6.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유대강화
7. 기술자단체의 보호와 육성

② 기술인회는 제1항의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1.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시범사업 실시
2. 산림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과 지도
3.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4. 산림기술 자료의 축적
5. 해외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산림기술 정보교류 증진
6. 기술인회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7. 산림교육시설 등 운영 및 관리
8. 그 밖의 기술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기술인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위탁 및 기타사업)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탁사업, 교육기관관리, 기술전문기관관리, 품셈관리, 산림사업품질,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대가기준의 관리 등의 업무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8.]

제4조의3(공여이익 수혜자) ① 기술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기술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4. 8.]

제 3 장 회원 및 회원의 교육 등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회원은 「산림기술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등을 말하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8.>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4. 8.>

1.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로서 기술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산림기술법」에 의한 산림기술자 자격·경력관리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자

2. 전 호 이외의 자로서 기술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③ 준회원은 제2항 이외의 자로서 기술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산림기술법」에 의한 산림기술자 자격·경력관리 만을 위하여 기술인회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4. 8.>
- ④ 명예회원은 기술인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⑤ 기술인회의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기술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 ② 기술인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20. 4. 8.>

제7조(회원의 탈퇴) 기술인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탈퇴서를 기술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회원은 기술인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본 정관에 의한 모든 직책에 피임될 수 없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제규정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 의무
3. 회비 납부 의무
4. 기타 기술인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9조 삭제 <2020. 4. 8.>

제10조(포상) 회장은 산림기술 분야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기술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외부인사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1. 제8조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2. 기술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한 회원
3. 기술인회의 사업추진을 방해한 회원
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
5. 회비를 체납한 회원

② 제1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 4. 8.>

1. 제명
2. 자격정지(3개월이상 1년이하)
3. 경고

③ 회장은 제1항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처분 받은 회원에게 징계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처분 기준은 [붙임 1]과 같다. <개정 2020. 4. 8.>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삭제 <2020. 4. 8.>
4. 삭제 <2020. 4. 8.>
5. 삭제 <2020. 4.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을 할 수 있다.

1. 정관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때
2. 「산림기술법」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이 기술인회를 탈퇴 또는 제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 등 일체의 금원에 대한 권리는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0. 4. 8.>

[전문개정 2020. 4. 8.]

제13조(회원의 재가입) ① 제12조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본인이 기술인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면 서약과

함께 회원으로 재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재가입 절차는 신규가입에 준한다. <개정 2020. 4. 8.>

②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자격 상실된 회원의 재가입은 연체된 회비를 납부한 후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원 에 대한 자문·기술지도 등) ① 기술인회는 회원의 자격·경력 및 실적관리와 제증명 발급 등을 위하여 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기술지도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8.]

제 4 장 조직과 임원

제15조(조직) ① 기술인회 조직은 총회, 이사회, 감사, 기술업무분회, 지회, 연구원, 교육원 등을 두며 운영위원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술인회 직제는 제4조 및 제4조의2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제로 회장, 제1수석부회장·제2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이사, 위탁사업본부, 일반사업본부, 총괄사업본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각 조직의 구성과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8.>

[전문개정 2020. 4. 8.]

제16조(임원) ① 기술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0. 4. 8.>

1. 회장은 1인으로 한다.

2. 부회장은 10인 이내로 한다.(업무분회장은 본 회의 부회장으로 한다.)

3. 감사는 2인으로 한다.

4. 이사의 정수는 20인 이내로 한다.(제1호내지 제2호의 자 포함)

② 산림기술 업무를 관장하는 산림청의 담당국장은 재임기간 중 기술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20. 4. 8.>

③ 기술인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근이사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④ 기술인회의 상임임원은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7조(고문·자문위원) ① 기술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산림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 ④ 해당 임기를 마친 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승계할 수 있다.
- ⑤ 고문·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4. 8.>

- ② 부회장은 회장 및 업무분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되,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4. 8.>
- ③ 선출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4. 8.>
- ④ 감사는 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⑤ 임원 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8.>

제19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4. 8.>
-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술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위원회를 총괄한다. <개정 2020. 4. 8.>

- ② 회장은 제1수석부회장, 제2수석부회장을 지명하여 사무업무, 대외업무 총괄 관리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제2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4. 8.>
- ③ 부회장은 회장의 결위 또는 유고시에는 제1수석부회장, 제2수석부회장 및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8.>
- ④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부의된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술인회 업무 및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4.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그 사실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5. 삭제 <2020. 4. 8.>

② 기술인회의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4. 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따른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해당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0. 4. 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0. 4. 8.]

제23조(임원의 해임) ① 임기 만료 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업무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선출직 임원으로 다시 선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4. 8.]

제24조(임원의 보수 등) ① 상근하지 않은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 4. 8.>

제2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① 이사는 「민법」 제65조와 「상법」 제382조의3 및 제382조의4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는 「상법」 제414조를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26조(임직원의 직무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4. 8.]

제 5 장 총 회

제27조(총회의 구성) ① 기술인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8.>

제28조(대의원) ①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수는 20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4. 8.>

② 대의원의 구성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4. 8.>

1. 선출직 대의원 : 정회원 중 업무분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회원
2. 당연직 대의원 : 제16조에 의한 임원(상근임원 제외), 제17조에 의한 고문 및 자문위원, 교육원장, 연구원장

③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자로서 총회의 참석권, 발언권, 의안상정권, 의결권 및 투표권을 갖는다. 다만, 의안상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상정할 수 있다.

제29조(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은 정회원 중 업무분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4. 8.>

<개정 2020. 4. 8.>

② 대의원의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대의원의 자격승계 등) ① 당연직 대의원이 그 직무를 사임하거나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대의원직을 승계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이 사임코자 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협회장과 단체가 후임 대의원을 선정하여 기술인회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를 공시하여 결정한다. 다만, 대의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③ 회장은 승계사실을 해당 대의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4. 8.>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결의로서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10일 전에 의사일정 등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총회의 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3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0. 4. 8.>

② 대의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은 서면의결서에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당일 총회의 의결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8.>

④ 대의원은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시킬 수 없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제19조 제3항의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인회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결의로서 총회에 요구된 사항
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결 제척)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4. 8.>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회원자신과 기술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37조(이사회의 구성) ① 기술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38조(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마다 1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가 업무와 재정상황,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

제39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0. 4. 8.>

- ② 의결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당일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술인회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정관 및 제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 상정 할 안건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원가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감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10.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1.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기술분회, 업무분회, 연구원, 교육원, 지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회비 및 수수료 등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13. 중요한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4.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20. 4. 8.]

제41조(의결권의 제한) 기술인회 임원중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제35조의 규정에 준하는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 7 장 위 원 회

제43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술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사심의 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술·권익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② 위원의 임기는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44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업무분회 및 지회 <개정 2020. 4. 8.>

제45조(업무분회 및 지회) ① 제15조에 따라 기술인회의 업무분야별 조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산림사업법인분회, 기능인영림단분회, 기술사사무소분회, 조경사업자분회, 엔지니어링사업자분회, 원목생산자분회, 산림조합분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회장은 각 전문분야별 협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분회는 소속기술자 및 업체의 자격·경력, 자격자보유증명, 교육 등 본 회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분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4. 8.>

⑤ 제15조에 따라 기술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4. 8.>

⑥ 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 4. 8.>

⑦ 지회는 본 회 사업을 지역별로 수행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4. 8.>

[전문개정 2020. 4. 8.]

제45조의2(업무분회의 직무) ① 제15조에 따라 업무분회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분회의 구성은 업무별로 조직된 단체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각 분회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분회의 구성과 업무범위 등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8.]

제 9 장 연구원 및 교육원 <개정 2020. 4. 8.>

제46조(연구원·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 ① 제15조에 따라 회장 직속으로 연구원과 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원장을 각각 1인을 두고 원장은 기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삭제 <2020. 4. 8.>

2. 삭제 <2020. 4. 8.>

② 원장은 여건에 따라 상임,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기술인회 임원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원장은 부원장, 행정실, 연구실,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4. 8.>

⑤ 원장은 사업량을 감안하여 연구원, 강사, 일반행정원, 기술전문기관요원 등을 임용할 수 있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8.>

⑥ 연구원은 연구사업비, 기타사업비, 국가보조금 등을 사용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이며, 교육원은 교육비, 국가보조금, 본 회 지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0. 4. 8.>

⑦ 각 기관의 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제, 보수, 인사(채용), 위임전결규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4. 8.>

⑧ 그 밖의 각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4. 8.>

[전문개정 2020. 4. 8.]

제47조(연구원의 업무) 연구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정책 및 임업기술에 관한 연구용역
2. 개인 및 법인 학술연구용역 및 협업 연구용역
3. 각종 산림 관련 계획·조사·시험·분석·평가·진단·기술판단·기술자문·기술지도
4. 임업기술개발 및 보급
5. 산림 관계 법령 및 제도·시책에 관한 개선 건의
6. 「산림기술법」 제3조에 의한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산림기술개발 관련 사업, 해외기술이전 등의 사업
7. 「산림기술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산림기술시범사업
8.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전문개정 2020. 4. 8.]

제47조의2(교육원의 업무) 교육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전문교육 및 산림기술 보급
2.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중장기 계획 및 성과평가 계획 수립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교류 및 협력
4.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 관련 직무·안전 교육
5. 산림기술 자문 및 지도
6. 산림분야 시책,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교육
7. 교육원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기자재 운영 및 관리
8.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본조신설 2020. 4. 8.]

제 10 장 집 행 기 구

제48조(집행기구) ①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된 사항과 위탁업무, 일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수석부회장은 제15조에 따라 사무처, 지회, 관련 위원회 업무를, 제2수석부회장은 업무분회 및 대외업무, 관련 위원회 등을 총괄한다.

③ 기술인회 집행기구의 직제조직 및 임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④ 기술인회 임직원의 임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⑤ 기술인회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⑥ 기술인회의 사무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8.>

⑦ 그 밖의 기술인회 집행기구의 사무, 물품,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4. 8.>

[전문개정 2020. 4. 8.]

제49조(임직원의 급여) 기술인회 집행기구 임직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 및 기타 제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50조(퇴직금) 기술인회 상근임원과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8.]

제51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기술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3. 해당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전문개정 2020. 4. 8.]

제52조 삭제 <2020. 4. 8.>

제 11 장 재 정 및 회 계

제53조(재산) ① 기술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술인회가 취득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회비 및 보통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은 [붙임 2]와 같다. <개정 2020. 4. 8.>

⑤ 재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8.>

제54조(회계연도) 기술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5조(수입) ① 기술인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기술인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사용한다.

1. 회비

2. 입회비 및 특별회비

3. 보조금

4. 수수료(법정 위탁 사무를 위하여 납부된 법정수수료는 제외한다)

5. 찬조금·기부금

6. 사업 수입금

7.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회비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기부금의 경우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8.>

[전문개정 2020. 4. 8.]

제56조(지출) ① 기술인회 지출은 위탁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 및 운영경비에 사용한다.

② 기술인회의 예산·회계사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기술인회의 계약 사무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20. 4. 8.>

[전문개정 2020. 4. 8.]

제57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기술인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58조(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① 기술인회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 12 장 보 칙

제59조(정관변경) 기술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기술인회 공시) 기술인회의 공고는 기술인회의 회지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지회 게시판 포함)에 이를 게시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61조(임원과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기술인회 임원 및 집행기구의 임원, 연구원장, 교육원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처와 본부 직원은 상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② 상근임원과 직원은 공무원(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③ 상근임원과 직원은 영리적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2조(규정 및 지침) 기술인회는 정관이 위임한 모든 사항과 그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 및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8.]

제63조(준용)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 13 장 해산 및 청산

제64조(해산) 기술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림청장에게 신고한다.

제65조(잔여재산의 처분) 기술인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0. 4. 8.]

부 칙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가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 4. 8.]

제2조(경과조치) ① 기술인회의 창립을 위하여 2018년 12월 20일에 개최한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로 본다.

② 기술인회의 창립총회 시 선임된 임원 및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 및 회원으로 본다.

③ 기술인회의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를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로 본다.

제3조(설립준비위원장 등의 임기) 이 정관의 시행이전에 선임된 설립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임원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원등의 임기개시) 기술인회의 최초선출직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법인설립허가와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2020. 4.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정관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이 정관 가운데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조항을 갈음하여 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의 적용례) ① 제55조제3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